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추가〉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9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7.

(3) 회 부 일 : 2025. 5.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관련기관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illegible]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3. (생략)

<신 설>

② ~ ⑬ (생략)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이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1)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민법」 제32조²⁾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추가하여(참고자료 1: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³⁾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23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보다 선제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특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할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표자 및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만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와 비장애인 기본권 보장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23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등이 있으며,

각 조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관련기관으로, 각각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명시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외 타 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있을 수 있음.

- 예컨대,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한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등이 있으며(참고자료 2: 타 부처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현황),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 한국장애인일자리개발원,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등이 있음.

<시·도지사가 허가한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현황 >

2025.5. 기준

시도	법인 수(개소)	장애인 직접 대면 인력(명)
서울	134	1,965
부산	10	25
인천	21	1,570
광주	44	624
대전	5	581
울산	22	929
경기	72	545
강원	53	67
충남	55	514
경남	86	86
합계	502	6,906

주1): 장애인 직접 대면 업무 수행 인력은 해당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산하 기관의 인력까지 포함하여 제출한 기관이 있음.

주2): 대구,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는 미제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만을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특정하는 경우,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 외 타 부처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4) 보건복지부는 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나 수단의 한계로 인해 전수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임.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8개소, 고용노동부는 1개소의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출하였음.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 또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비하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취업제한은 침익적 행정에 해당하는 규제로 법률의 명확성이 중요한데, 해당 개정안은 사전에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지는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및 실적 등의 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 직원 중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도 행정관청에 사전 신고나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을 통한 사후 확인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각 장애인관련기관의 종사자(법인 소속 직원 포함)는 현행 규정으로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됨.

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에 국한하는 것은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타 부처 소관 기관들도 장애인의 직접적인 대면업무를 수행함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포함하면서 대면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간접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법인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 입법으로 판단됨.

-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성원의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 존재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는 등 운영상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법인의 자율성 역시 존중받아야 함.

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개정안의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석의 모호성을 가져 법률 적용 대상 시설의 현장에서 혼란 초래할 수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간 대면 업무를 직접과 간접업무로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고, 일부 외부인력(자원봉사, 상담사, 외부 치료서비스 제공자 등)이 관여하는 업무 등을 포함할 지 여부도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부칙 규정에서 법 시행 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현황>

2025.5. 기준

연번	법인명	주요 수행사업
1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3개 회원 단체로 구성 2. 단체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사업 3. 제도개선 및 권익증진
2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1개 회원 단체로 구성 2.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기금
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1. 장애인 상담사회교육지원사업 2. 장애인 가족문화지원사업
4	(사)한국농아인협회	1. 전국농아인대회 및 세계농아인대회 2. 수어통역사자격관리사업 등
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시각장애인정보제공 및 접근성 사업 2. 시각장애인 생활훈련을 위한 시설운영
6	(사)한국장애인부모회	1. 장애인부모교육지원사업 2. 전국장애인부모대회
7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1.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사업 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8	(사)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1. 발달장애인권익옹호지원사업 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9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1. 자폐인의 권리옹호 및 인식개선사업 2. 자폐인 교육 및 연구사업
10	(사)한국장애인연맹	1. 장애인 국제네트워크구축 2. 장애인인권저널제작사업
11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1. 여성장애인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12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장애인 정책 및 인권사업 2. 월간함께걸음발행사업
13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1. 장애인정책모니터링 및 대안포럼 2.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교육
14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1. 장애 관련 국제 협력 2. 장애가정청소년 인적투자 두드림
15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1.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직업 및 사회 참여 확대 사업
16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2.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연번	법인명	주요 수행사업
17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 장애인복지관 정책개선사업
18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에 관한 사업
19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교육 2.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
20	(사)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1.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2.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선도프로그램 발굴
21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1. 척수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민관 파트너쉽 구축사업
22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1. 뇌성마비 장애인 재활복지 및 문예진흥사업 2. 뇌성마비 복지관운영사업
23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사업 2. 인권상담센터 운영
24	(사)한국의지보조기협회	1. 의지·보조기기사 보수교육 관련 사업 2. 학술대회 개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
25	(사)한국장루장애인협회	1. 장루관리 방문교육 및 간호
26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1. 신장장애인 회원협력교류사업 2. 복지정보지발간사업
27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1. 장애인 장학 후원사업(사랑의 끈 연결운동) 2. 희망씨앗추천사업
28	(사)자행회	1. 지적장애인 교육 및 재활시설 운영 2. 지적장애인 권익보호사업
29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1.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2. 언어재활기관 전공학과 인증사업
30	(사)해냄복지회	1. 발달장애교육 및 재활사업 2. 뇌병변장애 예방 및 재활사업
31	(사)국제키비탄한국본부	1. 저소득 장애인 지원 2. 장애의식 개선사업
32	(사)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1. 장애인재활상담사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2. 장애인재활상담사 조사연구
33	(사)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1. 장애인 건강증진 정책연구 2. 학회 및 전문가 단체 협력사업
34	(사)한국시각장애노인복지협회	1. 시각장애노인 복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연번	법인명	주요 수행사업
35	(사)한국근육장애인협회	1. 근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사업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상담 사업
36	(재)한국장애인재단	1. 장애인정책모니터링 및 대안포럼 2.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교육
37	(재)푸르메재단	1. 재활병원, 재활의원 설립 및 운영 2. 장애 지역의료재활사업
38	(재)이형섭복지재단	1.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39	(재)스마일재단	1.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2. 장애인 치과센터* 운영 등 * 분사무소(더스마일치과의원) 운영
40	(사)동행연우회	1.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상담, 후원, 봉사활동, 학비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1	(사)자원봉사애원	1.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장애인 대상) 2. 장애인과 함께하는 꿈씨음악회
42	(사)우리복지	1. 소외계층 전문 복지서비스 2. 장애인활동지원 3. 발달장애인 카페 등
43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1.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44	(재)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1. 장애인 서핑 프로그램
45	(재)경북행복재단	1.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보건 사업 개발과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교육 운영 3. 사회복지·보건 서비스 운영·평가에 관한 지원 등 4. 사회복지·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5.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8. 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등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46	(재)대선공익재단	1. 무료급식 사업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타 부처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2025.5. 기준

연 번	법인명	법인의 주요 수행사업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수탁운영 및 관리 •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위한창작,교육,교류협력사업 • 장애인문화예술관련국가및지방자치단체위탁하는사업 • 기타법인의설립목적달성을위한부대사업
2	한국장애예술인협회	• 장애예술인의 주권 신장 • 장애예술인의창작활동지원을위한사업 • 장애예술인의발굴,육성을위한교육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에대한연구및인식개선 • 장애예술인복지향상 • 기타 본법인의목적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부대사업
3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 전국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 장애예술인육성을위한교육사업 • 장애예술인의예술활동공간마련을위한예술회관건립사업 • 장애인예술국제교류사업 • 장애인의문화예술향유권의확보와차별제거를위한사업 • 문화예술인유공자및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국가포상추천,시상사업 • 장애문화예술을통한사회인식개선을위한홍보사업 • 장애인문화예술관련법,제도개선등정책연구사업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의문화예술발전관련위탁사업 •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관련회지및화보,신문발행사업 • 기타 장애총의목적달성을위한각종부대사업
4	대한장애인수영연맹	• 장애인수영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장애인수영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장애인수영 전국연맹체 설치 및 운영 • 장애인수영국내·외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수영시·도지부연맹의지원및육성등정관에서정한목적사업
5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 협회	•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에 관한 상담 및 조사·연구사업 • 장애인 방송 연기자 발굴·양성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 장애인의 방송연기활동 및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
6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	•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연 번	법인명	법인의 주요 수행사업
	연맹	• 시각장애인국내외동하계종합대회및종목별국제대회의 개최 • 시각장애인의체육발전을위한지도자,심판,등급분류사 등 전문인력양성및교육 • 시각장애인스포츠활동을통한장애인식개선등
7	한국장애인사진콘텐츠 협회	• 장애인 무료 사진 교육 및 콘텐츠 교류 • 장애인및소외계층유적지탐방행사개최 • 사진창작예술프로그램등개발,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제공 • 사진창작예술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장애인사진콘텐츠관련저작물인쇄,출판지원사업 • 장애인 · 소외계층자활을위한복지사업등기타법인의 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8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 회	• 1국내외 장애인단체 문화예술교류 사업 및 문화프로 그램 개발 보급 • 교육사업장애인문화에관한계몽 및 간행물발간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인지원사업 • 장애인과비장애인문화공감비전캠프 및 장애인인식개 선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공연, 기능별 대회, 축제운영사업 • 장애인 예술단 및 장애인문화예술학교,문화예술회관 건립운영
9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 발원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사 업 •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및 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후원사업 • 장애인들의 전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 장애인 문화학교 운영사업
10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 회	• 예술 활동 기획 사업 • 장애인문화·재활정보지발행 •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기획운영사업 • 장애인미디어교육훈련및전시행사사업 • 장애인문화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통신센터의운영 • 장애인스포츠단의운영 • 장애인재활캠프및문화예술탐방사업 • 해외재활기관및문화단체와의교류협력사업 • 기타 이법인목적달성에필요한제반사업
11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문화복지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등 소외계 층에 제공 • 장애인국제문화복지교류및협력사업

연 번	법 인 명	법 인 의 주 요 수 행 사 업
		• 장애인등소외계층을한문화화클럽및문화전문방송운영 • 문화복지시설부설운영,5.문화복지사제도설립,교육및양성 • 소외계층을위한평생교육사업 • 장애문화예술관련목적사업개최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12	빛소리 친구들	•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진 • 장애인복지시설방문공연및‘외부문화예술활동및체험학습’개최 • 예술적 잠재력이 있는장애인 발굴및지속적인지도와지원
13	한국장애인미술협회	• 장애인 문화예술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의전문화를위한조사연구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인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및전시발표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인의친목도모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회원 조직화사업
14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 시각장애인 공연예술 사업 • 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 • 문화적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희망사업(희망음악회) • 시각장애인 음악관련 직업 연구및개발사업 • 장애인(중복장애인) 전문예술인 발굴,육성사업
15	꿈틔움	• 장애인 예술·문화권 향유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장애인관련문화증진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예술·문화 활성화를위한 교육 사업 • 장애인 문화권 증진을 위한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
16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체험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 소외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공익사업 • 장애인의예술활동및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17	더 작은 재단	•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시각장애인전용전시장 등)을 통한 공익 전시 및 공연 지원 • 문화예술소외계층체험기회확산 • 장애인문화예술관련자료개발및활동지원 • 문화예술을통한청소년자기계발기회확대
18	한국장애인음악협회	• 장애인 음악 역량 강화 캠프 • 전국장애인합창대회및세계장애인합창대회개최 • 장애인문화콘텐츠제작및공급 • 장애인문화교류사업및교육사업등

연 번	법 인 명	법 인 의 주 요 수 행 사 업
19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 회	•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예술공연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취약지역접근성확대를위한공연중계및 향유사업 • 전문장애예술가육성을위한문화예술교육및엔터테인먼트사업
20	한국장애인서예협회	• 장애인 서예 문화예술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출판 • 장애인 서예문화 예술의 전문화를 위한 조사연구 • 장애인 서예문화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 련 및 전시발표 • 장애인 서예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회원 조직화
21	우리들의 눈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미술지도교사 파견 • 시각장애인특수학교에점자도서보급 • 시각장애인특수학교에도예용가마보급 • 시각장애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미술작품공모전개최 • 시각장애학생들의작품을전시하는전시기획사업
22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 세계 및 지역의 동·하계 종합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 회의 개최 등 • 국내의 동·하계종합대회및종목별대회참가및개최등 • 발달장애인선수건강증진프로그램의보급과운동능력보 급 • 발달장애인선수 선발, 육성, 지원과 등록, 관리 및 등 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23	대한장애인컬링협회	• 장애인컬링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컬링 지원 및 육성 • 장애인컬링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장애인컬링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등
24	한국휠체어농구연맹	• 휠체어농구리그의 운영 및 이와 관련한 사업 • 휠체어농구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 • 휠체어농구선수들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한 재원조 달 관련사업 • 휠체어농구에 관한 출판물 발간과 저변확대 및 홍보 와 관련한 사항 • 대한장애인농구협회 관련 지원사업 • 기타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6	대한장애인조정연맹	• 장애인조정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설치 및 운영 • 장애인조정종목대회의 주최 및 주관, 국제대회 개최

연 번	법인명	법인의 주요 수행사업
		및참가 • 장애인조정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27	대한장애인력비협회	• 세계 및 지역의 종합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의 개최 • 세계 및 지역의 종합 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28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 세계 및 지역의 동·하계 농아인 종합 체육 대회 개최, 선수단 파견 및 지원 • 농아인 생활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체육생활화를 위한 사업 • 농아인 선수 및 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교육 • 농아학생 체육진흥을 위한 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 농아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등

자료: 보건복지부

2. 고용노동부

2025.5. 기준

연 번	법 인 명	법인의 주요 수행 사업
1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 표준사업장 생산품 안정적 판매지원 시스템 구축 - 금융접근성, 거주 및 출퇴근 편의성 증진 - 표준사업장진흥을 추진할 법적지위 확보 - 전국 단위 조직체계와 회원간 소통체계 구축

주1): 고용노동부 소관 전체 장애인 사업 수행 비영리법인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함.

자료: 보건복지부